

		<h2 style="margin: 0;">보도참고자료</h2>			
		배포일시	2019. 4. 9(화) 총 2매(본문2)	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 보험과	담당자	·팀장 오송천, 사무관 문수빈, 주무관 송혜주 ·☎ (044) 201-4861, 4872	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##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-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.
  
-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,
  - \*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 인정, 초과시 비급여
  
-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,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  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중앙일보·한국일보 등, 4.9(화)) >

◆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... 한의사 “환자 치료권 박탈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수빈 사무관(☎ 044-201-48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